

☐ [] 국내결혼중개업체 ☐ 공시
[] 국제결혼중개업체

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이
의
의

○○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
[illegible]

※ 처분내용은 “영업정지 ○월 ○일”, “과태료 금액 ○○원”으로 적습니다.